

골재채취업 등록증

1. 등록번호: - (연도표시 - 일련번호)
2. 업종:
3. 상호(법인명):
4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 :)
5. 사무소소재지:
6. 추가등록업종:

「골재채취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도지사
특별자치시장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뒤쪽)

변경사항			
변경연월일	변경구분	변경내용	기록연월일 ·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

행정처분사항 (시정지시 · 시정명령 · 영업정지 · 등록취소)			
처분내용	사유	처분기관 (처분일)	기록일 및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

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			
신고일	신고수리일	다음 신고기간	기록일 및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

골재채취능력에 관한 사항			
연도	업종	골재채취능력(㎥/년)	기록일 및 기록자 (서명 또는 인)